

춘천지방법원 2022. 9. 7 선고 2022가단129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9. 7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1. 12. 13. 접수 제6410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 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정수영

별지